

구급차 12가3456 (이하 "사업자"이라 한다)와 주식회사 이비카드(이하 "이비카드"라 한다)는 구급차 카드 결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 한다.

**제1조(목적)**

본 계약은 주식회사 케이티를 통하여 "사업자"가 무상으로 설치된 "카드결제기"를 이용하여 발생한 이용요금 지불거래에 대한 정산(운영)을 "이비카드"가 수행함과 관련하여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.

**제2조(용어정의)**

- 1."구급차"라 함은, 시장,군수,구청장으로부터 구급차 운용을 신고한 구급차량을 말한다.
- 2."카드결제기"라 함은, "구급차" 내 설치하여 "카드"를 이용하여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.
- 3."카드"라 함은, 선불 교통카드, 신용카드를 총칭하여 말한다.
- 4."정산"(운영)이라 함은, "사업자"의 "구급차"를 이용하는 고객이 "카드"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승인(조회), 결제업무와 제반 업무 등을 말한다.

**제3조(역할)**

- 1."사업자": "카드결제기"의 사용(이용)
- 2."이비카드": "카드" "정산"을 위한 대표가맹점 및 정산, 서비스 운영, "카드결제기" 무상지원

**제4조(통신료)**

"카드"결제 거래승인을 위한 통신료는 "사업자"가 부담하며, 통신료 미납 또는 연체 등으로 해당 통신망 사용 제한 등에 따른 "카드"정산"불가에 따른 책임은 해당 "사업자"에 있다.

**제5조(권리 및 의무)**

"사업자"는 "카드"결제의 목적 외에 "카드결제기"를 판매,대여,임대, 임의사용 및 철수,처분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, "카드결제기"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본 계약 제10조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6조("카드결제기"양도 및 양수)**

- 1.구급차의 양도, 양수의 경우 자동으로 계약기간 동안 양도자의 권리가 양수자에게 승계되며, 제 10조 계약기간 동안 "이비카드" 이외 제 3자를 카드결제서비스 운영회사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.

**제7조(가맹점수수료)**

- 1."카드"결제 및 "정산"(운영)에 따른 가맹점수수료는 "카드" 이용대금의 3.6%(부가세별도)로 한다. 단, 수수료를 변동요인 발생 시 협의 후 서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2."이비카드"는 "사업자"에 "카드" 이용대금 지급 시 전 항의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.

**제8조("카드"사용 및 "카드"이용대금 정산)**

- 1."카드결제기"에서 사용 가능한 "카드"의 종류와 사용 한도는 "카드"발행사의 요청 또는 협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.
- 2."이비카드"는 "카드결제기"에서 "카드"가 사용되어 해당 승인 데이터가 센터 시스템에 수집된 날(D-day)로부터 3일차(D+3)이내 "이

비카드"가 선정한 은행 중, "사업자"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본 계약 제7조의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. 단, 입금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순연될 수 있다.

**제9조(부정 사용 및 리스크 관리)**

- 1."사업자"는 용역의 제공 없이 "카드"사용을 가장하여 "카드"소지자 또는 승객에게 현금을 대출하는 등의 부정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·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 만일 "사업자"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"이비카드"의 손실 발생 시에는 해당 "사업자"가 해당 손실비용을 보상한다.
- 2."사업자"는 "카드"로 이용대금 결제 후 "카드"소지자의 이의 제기 등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요구 시, 해당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 만일 "카드"이용 승객이 서명 날인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"이비카드"가 해당 카드사로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없거나 감면해 주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매출을 취소 또는 지급하지 않거나 기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/환수할 수 있다.

**제10조(계약기간)**

본 계약은 "카드결제기" 설치,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
**제11조(기타)**

- 1.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된 "카드결제기" 이전에 "사업자"의 "구급차"에 기 설치된 "카드결제기" 등으로 인한 위약금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"이비카드"가 책임지지 않는다.
- 2.본 계약의 내용은 각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, 본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각 당사자들 전원 또는 일부간의 모든 의사표시 또는 서면, 구두의 합의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.
- 3.본 계약은 "사업자"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차량번호	
사업자등록번호	
사업자명	(인)